9. 工業立地 開發指針(案)

建設部 1991.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장입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업입지의 원활한 개발공급을 통하여 제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장입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하여는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에 따른다.

제3조(공업입지개발 기본방향) ①공업입지개발은 지속적인 공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업생산규모의 성장추세를 감안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면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②공업입지개발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업종별 계열화·집단화에 의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되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지역별 개발방향) 지역별 공업입지개발은 공업의 적정한 배치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업집적도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개발한다.

1.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지역은 공업입지의 신규개발을 억제하되, 수도권내의 중소기업 공장의

이전 재배치에 필요한 공업단지는 제한적으로 개발한다.

2. 강원도지역은 동해안지역에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 공업단지를 개발하고, 내륙지역에는 중소규모의 신규공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한다.
3. 대전직할시 및 충청남·북도 지역은 서해안지역에 대규모 임해공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보하고, 내륙지역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공업단지를 개발한다.
4. 광주직할시 및 전라남·북도 지역은 서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업단지를 개발하여 공장입지를 장려하고, 내륙지역에는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점 공업단지를 개발한다.
5. 부산·대구직할시 및 경상남·북도지역은 산업구조의 기술고도화를 유도하고, 기존 공업단지의 주변지역과 내륙지역에는 중소규모의 신규공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한다.

제5조(공업입지 공급계획) ①건설부장관은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공업배치기본계획·지역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별·업종별·입지유형별로 공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운용한다. 이 경우 공업입지의 수요에 대하여는 상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 공급계획의 계획기간은 5년으로 하되 매년 공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2장 공업단지의 지정

제6조(공업단지의 지정요건) ①국가공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기간산업 및 첨단 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공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4.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5.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공

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도시 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②지방공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공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검토기준) ①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공업단지 개발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
2. 공업용수·도로·철도·항만·전력·통신·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3. 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
4. 공업단지 개발시 지역환경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부존 문화재에 대한 피해 여부
5. 국토건설종합계획·공업배치기본계획·공업용지공급계획·지역개발계획·도시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광역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②시·도지사는 지방공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업단지의 규모경제성과 지역발전의 파급효과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규모를 15만㎡ 이상 500만㎡ 이내로 한다. 다만, 입지여건 및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기업의 공업단지 지정신청) ①3이상의 기업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공업단지의 유형을 정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업단지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공업단지의 지정신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표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정신청을 위임한 기업의 내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지정신청서에는 공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

에 따른 환경 및 교통영향 분석자료와 폐수종말처리시설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업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지역 및 수산자원 보전지역
2.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3.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과 환경정책기본법 부칙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구역 및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5. 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 및 임업진흥촉진지역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

제9조(공업단지 지정신청서의 검토) ①공업단지 지정권자는 3이상의 기업이 신청한 공업단지에 대하여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업단지 지정권자는 당해 공업단지의 개발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도로·항만·공업용수·생활용수 등 기반시설의 신설 또는 확장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토지거래규제 등) 건설부장관은 공업단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구역 또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업단지의 개발

제11조(공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범위) ①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업지역 전체 면적의 2/3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잔여면적을 일괄개발하여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유수면 매립사업 또는 잔여지 개발사업으로서 2이상의 사업시행자가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개발대상면적의 2/3 이상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일괄개발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 지정신청을 한 대표기업 등이 당해 공업단지 개발사업을 일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 경우 입주기업의 내역을 부기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입주기업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아산국가공업단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업단지개발 기본계획의 작성)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작성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 생산공간·생산지원공간·공공시설공간·녹지공간 등이 배치구상과 그에 따른 공업지역·상업지역·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계획을 포함한다.
2. 공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계획에는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계획과 공업용수·생활용수 등 용수공급계획, 폐·하수처리계획, 공원녹지·자연녹지·차단녹지 등 공원녹지계획, 산업폐기물의 매립·소각·분해 등 폐기물처리시설계획, 에너지공급 및 통신시설계획 등을 포함한다.
3. 공업단지에 필요한 기타 시설계획에는 행정·교육·금융·의료 등 공공지원시설과 정보·유통·보관 등 생산지원시설 및 매점·복지회관·종업원주택 등 후생복지시설계획을 포함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개발지표와 기준 등에 관한 공업단지개발편람을 작성하여 배표한다.

③공업단지의 위치는 축척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상에 공업단지의 위치를 표시하고 경계선의 주요 변곡점을 좌표로 명기한다. 다만, 공업단지의 지정면적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만분의 1인 지형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공공녹지·도로 및 환경기초시설)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로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공업단지안의 녹지확보 기준
   가. 단지규모가 3㎢ 이사인 경우 공공녹지 면적율은 10% 이상

나. 단지규모가 1㎢ 이상 3㎢ 미만인 경우 공공녹지 면적율은 7.5% 이상

다. 단지규모가 1㎢ 미만인 경우 공공녹지 면적율은 5% 이상

라.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 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에서 충분한 공공녹지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나 매립지와 같이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2% 범위 안에서 하향 조정

마. 단지의 규모·위치 및 유치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계지역에 적정규모의 완충녹지대를 조성

2. 공업단지안의 도로확보 기준

가. 단지규모가 1㎢ 이상인 경우 도로면적율은 10% 이상을 확보하고, 1㎢ 미만인 경우에는 8% 이상을 확보

나. 공장부지가 평균 1만㎡ 이하의 소규모로 획지분할된 경우 도로면적율을 2% 이상 상향조정

다. 도시계획도로등 지역간 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공장부지의 평균규모가 10만㎡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도로망 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면적율을 하향조정

라. 단지내 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5m 이상 확보

3. 공업단지 연결도로의 확보기준: 공업단지의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와 기존도로의 소통능력·교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연결도로를 확보

4. 공업단지의 환경기초시설 설치기준: 공업단지에는 원칙적으로 단지전용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제14조(경관보전을 위한 조치)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교량 등 지상구조물의 형태결정과 건축물 등의 채색에 관하여 공업단지 전체의 미관을 고려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영향 평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업용지의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경우에는 실시계획인 승인신청전에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실시계획 승

인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전에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매장문화재의 발굴) 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중에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부장관에게 발굴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시행을 위한 지원

제17조(절차간소화를 위한 조치)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흐름은 별표 1과 같다.

②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요청 또는 승인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 ①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받아 동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공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지방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기반시설의 지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업의 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2. 낙후지역에 기업의 입주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공업용지의 분양가격을 적

정화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3. 진입도로, 공업용수도, 항만, 철도 등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지내 시설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4. 기반시설의 지원은 국가공업단지는 국가에서, 지방공업단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업단지에 대하여는 낙후지역의 개발촉진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개별공장입지의 지정 및 개발기준

제20조(입지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장용지조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을 일괄 의제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입지지정업무의 처리) ①시장·군수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적정여부
2. 사업계획의 내용 및 입지규모의 적정여부
3. 환경보전 및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
4.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
5. 발생폐기물의 처리계획 및 교통수요 유발에 대한 대책
6. 공장방류수가 농업용 관개·배수시설로 유입되는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7. 국토건설종합계획, 공업배치기본계획, 지역개발계획,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 및 다른 공업단지 개발계획과의 관계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별 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관할구역내의 기 개발된 공업단지나 계획중인 공업단지 또는 공장설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

2.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장입지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중 공업용지지구로 용도지역 변경신청을 하여 그 변경이 있은 후에 개별공장입지를 지정

제22조(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신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과 취락지역중 주거지구 및 녹지지구
2.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과 환경정책기본법 부칙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구역 및 특정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4.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 및 고속교통구역
5. 수도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
6.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 이내 지역
7.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 이내 지역
8. 상수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 이내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5㎞ 이내의 지역
9.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 이내의 지역
10. 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임업진흥촉진지역·산림훼손허가 제한지역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

②시장·군수는 자연경관의 보전과 공공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지역
2.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3. 농업용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제23조(환경기준)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가. 연간 고체연료의 사용량이 1,000톤 이상인 사업장

나.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

다.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및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라. 화학제품의 제조 및 정제시설

마.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시설

2.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가. 1일 평균 폐수배출량이 500㎥ 이상인 사업장

나.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

다. 산업용 화학물질 제조시설

라.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마. 염색시설

바. 제1차 금속제조시설

사. 석유정제시설

아. 종이제조시설

자. 가죽 및 모피제조시설(가죽 및 모피를 이용하는 가공시설은 제외)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개별공장입지를 승인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금지업종의 해당여부 판단 등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에 관하여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해당지역에 개별공장입지가 집단을 이룰 경우에는 지방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오염물질의 총량을 기준으로 환경관련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제24조(농지의 편입기준) ①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에 따른 농지의 편입허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 부지면적에 대한 농지의 편입허용비율은 70% 이내

2.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는 농지편입허용비율의 20% 이내

②시·도지사는 농지편입면적이 3,000㎡(상대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5,000㎡)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개별 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편입허용 비율을 초과하는 사항으로서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정입지의 지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역별 허용연면적) ①시·도지사는 시·군별로 공업집적도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적정한 공업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별 또는 시·군별로 개별 공장

입지의 연간 허용연면적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장입지의 연간 허용면적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개별공장입지의 지정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개별공장입지의 개발기준) ①개별공장입지에서의 도로확보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별공장입지와 인접하여 지역간 연결도로가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 확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해당 기업에서 부담
2. 개별공장입지로 인한 교통수요 유발로 도로교통관리상 기존도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기업에서 부담

②개별공장입지에서 공장폐수의 배출량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공업입지 현황조사등) ①시·도지사는 공업입지에 관한 정책수립 또는 공업입지 개발지침의 수정·보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관한 공업입지현황을 매년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12월 20일까지 건설부장관 및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공장의 수, 종업원의 수, 공장용지의 면적
2. 조사표의 작성: 시·군별, 입지유형별,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

②건설부장관은 매분기마다 공업입지개발에 관한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현재 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었거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중인 공업단지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